

업무취급 승인신청서

신청인 인적 사항	성명	퇴직일	
	생년월일	전화번호(휴대폰)	
	퇴직 전 소속	전자우편주소	
	퇴직 전 직위 (직급 등)	주소	
취업 (예정) 사실	기관명	취업예정직위	
	취업(예정)일	기관의 규모 (억원)	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외형거래액
	취업 후 담당업무		
업무취급 승인신청 대상업무 및 승인신청 사유	업무취급 승인신청 대상업무 *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2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를 기재합니다.		
	승인신청 사유 *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.		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18조의2제3항 및 「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」 제37조의3에 따라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

첨부서류	별지 제50호서식(취업 지원·예정 확인서)을 작성하여 업무취급 승인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십시오.
------	--

기재요령

-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
-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1항제1호(영리사기업체)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,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(법무법인등, 회계법인, 세무법인,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)은 연간 외형거래액을,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(사회복지법인 등)은 기본재산을 기재하십시오.

처리절차

